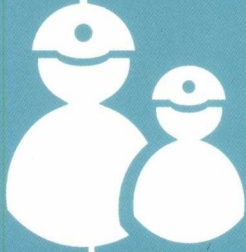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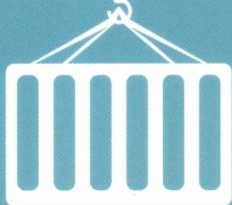


작업 전 안전 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건축물 등 리모델링, 인테리어, 유지보수, 철거, 멸실작업 전에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석면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01 석면이란 무엇인가요?

석면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질'이라는 뜻을 가진 섬유상의 '규산염 광물류'입니다. 석면은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이 좋고, 산이나 알칼리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며 내마모성이 좋아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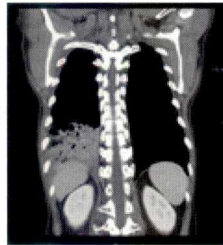
02 석면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석면은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어 폐포 또는 흉막에 침착하여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며, 특히 각섬석계의 갈석면과 청석면은 사문석계의 백석면에 비하여 인체에 더욱 유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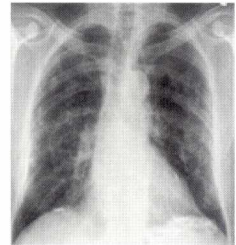
악성중피종 Mesothelioma



폐암 Lung Cancer



석면폐 Asbestosis



03 석면조사란 무엇인가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04 석면조사는 누가 · 언제해야 하는 건가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철거, 멸실, 유지·보수,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사전에 석면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05 석면조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석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 규모에 따라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기관석면조사**”와 의무주체가 스스로 실시하는 “**일반석면조사**”로 구분됩니다.

구 분	기관석면조사	일반석면조사
방법	-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실시	-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석면함유 여부, 위치, 면적)실시
대상 규모 (시행령 제30조의3)	- 건축물 :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 - 주택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이상 - 설비 : 1.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 피복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그 밖의 유사용도로 사용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이상 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이상 예) 주택(아파트)의 연면적이 1,500㎡이고,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50㎡인 경우 기관석면조사대상	-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 예) 상가건물의 연면적이 250㎡이고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40㎡인 경우 일반석면조사대상
서류 보존기간	-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이 3년간 보존	- 소유주 등이 해체·제거 작업종료시까지 보존
위반시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06 석면조사를 스스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관석면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며, 스스로 석면조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첨부된 〈서식〉 일반석면조사 결과서를 활용하여 다음의 단계로 조사하시면 됩니다.

STEP 1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대해 기능공간별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예) 화장실 칸막이, 부엌 벽재, 큰방 천장재 등

STEP 2

철거·해체하려는 자재종류 및 면적을 조사합니다.

- 육안, 설계도서(건축공사 시방서 등), 자재이력 등을 통해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자재종류 및 면적을 조사하여 기재합니다.
예) 슬레이트 25㎡, 텍스 7.8㎡, MDF합판 40㎡, 금속파이프 5m, 유리 20㎡, 플라스틱 41㎡ 등

STEP 3

자재종류별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합니다.

- ① 육안, 설계도서(건축공사 시방서 등), 자재이력 등을 통해 석면미함유 자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② 석면미함유 자재에 해당되지 않는 **석면함유의심 자재**를 대상으로 설계도서(건축공사 시방서 등), 자재이력 등을 통해 자재종류, 제조사, 제품명(모델명), 생산년월일, 및 한국공업규격(KS) 번호 등을 확인합니다.
- ③ 자재종류, 제조사, 제품명(모델명), 생산년월일을 확인한 경우 석면함유 건축자재 목록(첨부3), 무석면 건축자재 목록(첨부4)과 비교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④ 한국공업규격(KS) 번호를 확인한 경우 한국공업규격 석면함유물질목록(첨부5)을 참고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⑤ 위의 방법으로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석면조사기관에 석면함유 여부 등 성분분석을 의뢰합니다.
※ 석면미함유 자재, 자재정보확인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1)참조.

STEP 4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확인합니다.

- 석면이 1%이상 함유되어 있는 석면함유자재의 면적을 확인합니다.

STEP 5

조사내용을 기록·보존합니다.

- 〈서식〉일반석면조사 결과서는 해체·제거작업 종료시까지 보존합니다.

〈서식〉

일반석면조사 결과서

1. 일반현황

건축물명(설비명)		연면적(m ²)	
소재지(주소)		① 용도	
조사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사자명	

2. 조사결과

위치			④철거·해체 자재종류	⑤철거·해체 자재면적 (m ²)	⑥석면 함유여부 확인방법	⑦석면함유 여부 (O, X)	⑧석면함유 자재면적 (m ²)
②기능 공간명	철거·해체 부분	③철거·해체 해당유무 (O, X)					
	지붕재						
	천장재						
	벽재						
	칸막이						
	바닥재						
	분무재						
	문(출입, 창)						
	배관						
	건물외부						
	그 밖의 위치						

3. 관련사진

< >	< >

작성방법

- “① 용도” 란에는 주택, 상가, 공장, 사무실, 설비 등 주 용도를 적습니다.
- “② 기능공간명” 란에는 철거·해체가 이루어지는 기능공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 205호(거실), 1층 복도, 00문구점, 3층 남자화장실 등
- “③ 철거·해체 해당유무(O,X)” 란에는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이 해당되면 “O”, 해당되지 않으면 “X”를 적습니다.
- “④ 철거·해체 자재종류” 란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재종류를 적습니다.

철거·해체 부분	철거·해체 자재종류
지붕재	슬레이트, 밤라이트, 그 밖의 자재(자재종류 기재)
천장재	텍스, 밤라이트, 그 밖의 자재(합판), 석고보드, 그 밖의 자재(자재종류 기재)
벽재	밤라이트, 단열재, 회반죽, 그 밖의 자재(자재종류 기재)
칸막이	큐비클, 밤라이트, 단열재, 그 밖의 자재(자재종류 기재)
바닥재	바닥타일, 비닐장판, 그 밖의 자재(자재종류 기재),
분무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그 밖의 자재(자재종류 기재)
문(출입,창)	이음재, 접착제, 실링재, 그 밖의 자재(자재종류 기재)
배관	보온재, 파이프, 덕트, 개스킷, 유리섬유, 그 밖의 자재(자재종류 기재)
건물외부	아스팔트 싱글, 타르, 페인트, 콘크리트, 베이스패널, 그 밖의 자재(자재종류 기재)
그 밖의 위치	석면사, 석면포, 패킹재, 그 밖의 자재(자재종류 기재)

※ 철거·해체 자재종류 중 석면함유 의심자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2> 참조

- “⑤ 철거·해체 자재면적(m^2)” 란에는 해당되는 철거·해체 자재 종류별 면적(m^2)을 적습니다.
※ 다만, 철거·해체 자재종류가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인 경우 부피(m^3)로, 파이프 부분의 보온재인 경우 길이(m)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단위를 적습니다.
- “⑥ 석면함유여부 확인방법” 란에는 “설계도서”, “자재이력”, “육안”, “성분분석”, “기타” 를 적습니다.
※ 석면함유여부 확인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1> 참조
- “⑦ 석면함유여부(O,X)” 란에는 석면함유여부 확인결과 석면이 중량비율 1%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O”, 중량비율 1%이상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X”를 적습니다.
- “⑧ 석면함유자재면적(O,X)” 란에는 해당되는 석면함유 자재별 면적(m^2)을 적습니다.
※ 다만, 철거·해체 자재종류가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인 경우 부피(m^3)로, 파이프 부분의 보온재인 경우 길이(m)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단위를 적습니다.

〈서식〉

일반석면조사 결과서(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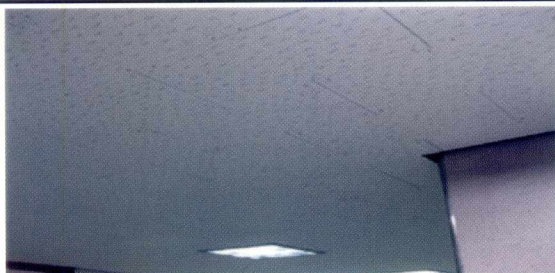
1. 일반현황

건축물명(설비명)	OO상가	연면적(m ²)	40
소재지(주소)	울산광역시 OO구 OO로 12-34	① 용도	상가
조사일	2015년 11월 10일 ~ 2015년 11월 10일	조사자명	홍길동

2. 조사결과

위치			④철거·해체 자재종류	⑤철거·해체 자재면적 (m ²)	⑥석면 함유여부 확인방법	⑦석면함유 여부 (O, X)	⑧석면함유 자재면적 (m ²)
②기능 공간명	철거·해체 부분	③철거·해체 해당유무 (O, X)					
	지붕재	X					
	천장재	O	텍스	10	자재이력	O	10
	벽재	O	밤라이트	10	분석의뢰	O	4
	칸막이	O	큐비클	4	분석의뢰	O	4
	바닥재	O	화강석	10	설계도서	X	-
	분무재	X					
	문(출입, 창)	O	유리문+샤시	2	육안	X	-
	배관	X					
	건물외부	X					
	그 밖의 위치	X					

3. 관련사진



〈 천장재 및 벽재 〉



〈 바닥재 및 칸막이 〉

07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중량기준 1%이상** 함유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사람은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작업방법



※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 1 작업장소 내 벽, 바닥, 창문 등은 불침투성 재질로 밀폐하고 인근 작업 장소와 격리조치를 한다.
- 2 작업장소를 음압밀폐 시스템 구조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사용) 로 조치한다.
- 3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 작업을 한다.
- 4 해체·제거작업 시 대상물이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다.
- 5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 잔재물은 규칙적으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청소한다.

작업계획 수립 및 주지

작업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하여 작업계획을 알린다.

- 공사개요 및 투입인력
- 근로자 보호조치 등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 석면조사 내용(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범위 등)

경고표지의 설치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에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표지 및 작업 안내 표지**를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위생설비의 설치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 또는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갈의실** 순으로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한다.

개인보호구 지급

방진마스크(특급) 또는 송기마스크 및 신체를 감싸는 불침투성 보호복 (머리를 감싸는 보호의, 장갑 및 덧신)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충분히 지급하고,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 작업시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잔재물 등의 처리

해체·제거된 석면 잔재물은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포대로 **2중 포장하여 밀봉한 후 석면 함유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첨부1 자재종류별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1. 석면미함유 자재를 확인합니다.

- 육안, 설계도서(건축공사 시방서 등), 자재에 표시된 라벨 등 자재이력을 통해 다음의 석면미함유 자재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 석면미함유 자재

목재, 합판(MDF 등), 고무, 유리, 철재, 플라스틱자재, 매트, 콘크리트(갈라진 부분을 보수한 부분은 제외), 샌드위치판넬 내부에 발포제, 스티로폼, 파티클보드(합판), 벽지, 건축공사 시방서에 무석면 자재로 표기된 경우 등

2. 자재정보를 확인 가능한 경우 석면함유여부를 조사합니다.

- 자재정보는 자재종류, 제조사, 제품명(모델명), 생산연월일 또는 한국공업규격(KS) 번호를 말합니다.
- 자재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설계도서를 확인하는 방법과 자재에 표시된 라벨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설계도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로 건축공사 시방서를 활용하고 실내인테리어에 사용된 자재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공사 시방서의 수장공사* 부분과 특기시방서의 인테리어 부분을 확인합니다.
* 수장공사 : 건축물 내부의 치장을 하는 마무리에 관한 공사
-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자재종류, 제조사, 제품명(모델명), 생산연월일 또는 한국공업규격(KS) 번호를 확인합니다.

건축물 건축공사
시방서와 특기
또는
특별 시방서의
목차

건축공사 시방서		특기(별) 시방서	
제 1 장	건축공사 일반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토 공 사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지정 및 기초공사	제 3 장	목 공 사
제 4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제 4 장	석고보드 벽/천정공사
제 5 장	조 적 공 사	제 5 장	수 장 공 사
제 6 장	미 장 공 사	제 6 장	금 속 공 사
제 7 장	방수 및 방습공사	제 7 장	타 일 공 사
제 8 장	금 속 공 사	제 8 장	유 리 공 사
제 9 장	지붕 및 환풍공사	제 9 장	도 장 공 사
제 10 장	창호 및 유리공사	제 10 장	쉬트필름공사
제 11 장	타 일 공 사	제 11 장	방 수 공 사
제 12 장	도 장 공 사	제 12 장	조 적 공 사
제 13 장	수 장 공 사	제 13 장	외 부 공 사
제 14 장	잡 공 사	제 14 장	특 기 공 사

◎ 자재종류, 제조사, 제품명(모델명), 생산연월일을 확인한 경우

- ① 석면함유 건축자재 목록(첨부3)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석면함유자재로 판단합니다.
- ② 무석면 건축자재 목록(첨부4)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석면미함유자재로 판단합니다.
- ③ 위의 ①, ② 방법으로 석면함유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석면조사기관에 석면 함유여부 등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합니다.

※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한국공업규격(KS) 번호를 확인한 경우

- ① 한국공업규격(KS) 석면함유물질 목록(첨부5)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석면함유자재로 판단합니다.
- ② 위의 ① 방법으로 석면함유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석면조사기관에 석면함유여부 등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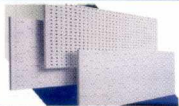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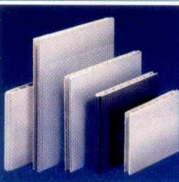
3. 석면조사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합니다.

- 육안, 설계도서(건축공사 시방서 등), 자재이력 등을 통해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자재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석면조사기관에 석면함유여부 등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합니다.

첨부2 건축자재 중 석면함유 의심자재

구 분	제 품	석면함유량(%)	조합물(binder)
벽 천장	스프레이외장	1 ~ 95	포틀랜드 시멘트, 실리카 나트륨, 고착제
	미장재	1 ~ 95	포틀랜드시멘트, 실리카 나트륨
	석면-시멘트 시트	20 ~ 50	포틀랜드 시멘트
	Spackle	3 ~ 5	석회물, 카세인, 인공수지
	이음 접합재	3 ~ 5	아스팔트
	하드보드 판지	80 ~ 85	풀, 석회, 진흙
	비닐 벽지	6 ~ 8	
	단열, 절연판	30	규산
바닥	비닐-석면 타일	21	폴리염화비닐
	아스팔트-석면 타일	26 ~ 33	아스팔트
	바닥용 탄성수지	30	드라이 오일
	매스틱 점착제	5 ~ 25	아스팔트
지붕 및 외벽	지붕 펠트	10 ~ 15	아스팔트
	펠트 싱글	1	아스팔트
	지붕 싱글	20 ~ 32	포틀랜드 시멘트
	지붕 타일	20 ~ 30	포틀랜드 시멘트
	외벽 싱글	12 ~ 14	포틀랜드 시멘트
	물막이 판자	12 ~ 15	포틀랜드 시멘트
파이프 및 보일러	시멘트 파이프	20 ~ 90	포틀랜드 시멘트
	블록 단열재	6 ~ 15	탄산 마그네슘, 실리카 칼슘
	전성 파이프 덮개	50	탄산 마그네슘, 실리카 칼슘
	슬레이트	90	실리카 칼슘
	종이 테이프	80	폴리머수지, 풀
	연마제	20 ~ 100	진흙

첨부3 석면함유 건축자재 목록

구 분	제 품	제조회사 (제품명)	석면함유 제품 생산년도	석면 함유량(%)	주 용도	제품형태
지붕재	슬레이트	KCC (슬레이트)	1958~2003	10~15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의 모든 건축물의 지붕 및 벽체에 적용	
		벽산 슬레이트	1960~2004	10~15		
천장재	석고 시멘트판	KCC (슬레이트)	1978~2003	2~5	사무실, 주택, 상가, 호텔, 모든 건축물의 천장마감재	
		벽산 슬레이트	1985~2005	5~10		
칸막이	섬유강화 시멘트판	KCC (밤라이트, 나무라이트)	1974~2003	10~15	건물의 천장, 및 칸막이 등의 내장공사의 마감재 및 UBR Back Up 재료 사용	
		벽산 (밤라이트, 미장밤라이트)	1970~2003	10~15		
외벽재	압출성형 콘크리트 패널	벽산 (베이스패널)	1987~2007	10~15	건축용 건축물 외벽&내벽, 바닥, 칸막이, 계단 등인테리어 건축물 차음용 고속도로, 국도, 철도의 반사형차음판	

※ 자세한 석면함유 건축자재 및 제품 DB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사업안내/신청 → 직업건강 → 석면안전관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첨부4 무석면 건축자재 목록

구 분	제 품	제조회사 (제품명)	석면 함유량(%)	주 용도
천장재	암면흡음 천장판	KCC (마이톤, 마이텍스)	0 (無 석면)	사무실, 주택, 상가, 호텔 모든 건축물의 천장 마감재
		벽산 (시스톤, 이지톤)	0 (無 석면)	
단열재 · 흡음재 · 보온재	미네랄울	KCC 벽산	0 (無 석면)	뛰어난 단열성, 흡음성과 함께 내열성 및 시공의 편리함 때문에 여러분야에 사용
	그라스울	KCC 벽산 하이소	0 (無 석면)	건물의 벽, 바닥, 천장 및 파이 프보온, 차량, 선박 등에 사용 및 특수용도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
	아이소 핑크	벽산	0 (無 석면)	냉동창고, 건물의 중공벽, 외벽, 지하층, 옥상, 아이스링크, 냉동차, 축사 등 건물의 보온 단열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
	그라스울 보온통	KCC 벽산 하이소	0 (無 석면)	플렌지, 파이프 등의 보온재로 사용
	미네랄울 보온통	KCC 벽산	0 (無 석면)	플렌지, 파이프 등의 보온재로 사용
	세라믹 섬유보드	KCC (세라크울)	0 (無 석면)	각종 로벽 단열재, 고온용 버너 주위 흡음, 로내 각부 충전재 등에 사용
벽 및 천장 마감재	석고보드	KCC 라파즈	0 (無 석면)	건물의 내벽, 천장 및 간석벽체 등이 마감처리에 사용

첨부5 한국공업규격 석면함유물질 목록(2009년 폐기)

규격번호	제품명
KSL 5114	골석면슬레이트
5115	석면시멘트판
5116	석면시멘트관
5123	미장석면 규회판
5202	석면포
5203	석면편조패킹
5209	석면규회판
5212	산업기계용 석면 브레이트라이닝
5213	물전해용 석면격막
5215	석면단열시멘트
5301	석면사
5302	석면시멘트질 압력판
5304	석면패킹끈
5311	석면판
5314	석면시멘트질 하수관(무압력)
5406	압축석면판

안전보건공단 주소 및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서울지역본부	02-6711-28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서울북부지사	02-3783-8344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봉래동1가 5-36) 우리빌딩 7층
강원지사	033-815-1021	강원도 춘천시 경춘대로 2370(온의동 513)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강원동부지사	033-820-2521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정관빌딩 3층
부산지역본부	052-520-0585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부곡동 64-31 부산합동청사)
울산지사	052-226-0543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8번길 5(신정동 581-3)
경남지사	055-269-054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용호동 7-3)
경남동부지사	055-371-7560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양산노동합동청사 4층
광주지역본부	062-949-8755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빌딩 8층
전북지사	063-240-855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1가 807-8) 고용노동부종합청사 4층
전북서부지사	063-460-3621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로 482
전남동부지사	061-689-4931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선원동 1285)
전남서부지사	061-288-8706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제주지사	064-797-75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사로 473(이도이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충부지역본부	032-510-0532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 34-4)
경기남부지사	031-259-713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3층
경기북부지사	031-828-1935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경기서부지사	031-481-753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고잔동) 센트럴웨딩홀 제2층
경기동부지사	031-785-33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쇠골로 17번길 3(금곡동 106-2) 소곡회관 2층
부천시	032-6806-54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상동 538-3) 대신프라자 3층
대구지역본부	053-609-0543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9,20층
대구서부지사	053-650-6843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
경북동부지사	054-271-2042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대도동 124-4)
경북북부지사	054-478-8021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임수동)
대전지역본부	042-620-5625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문지동 104-7)
충북지사	043-230-7142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가경동 1171) KT 3층
충남지사	041-570-3436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1418)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본부 직업건강실	052-703-0647~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5층 직업건강실

